

# 서울남부지방법원

## 제 1 형 사 부

### 판 결

사 건 2016노1347 사기  
피 고 인 정유리 (7000000-00000000), 0000000000  
주거 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 (000)  
등록기준지 00 000 000 000 000  
항 소 인 검사  
검 사 조00(기소), 김00(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00 (국선)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고정2394 판결  
판 결 선 고 2017. 9. 7.

###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 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만일 피고인이 0000000 공인중개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그만 둔 사실을 알았다라면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고소인 강○○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중개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이 감소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5. 6. 4.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2015. 5. 27.부터 이 사건 사무실의 ○○○○○으로 일하지 않은 사실’을 숨겼더라도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피해자가 2015. 5. 23.자 오피스텔 임대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변제한 행위의 효력이나 피해자의 권리실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 \_\_\_\_\_

                         판사      홍○○ \_\_\_\_\_

판사 강○○ \_\_\_\_\_